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기밀 지정 주체·시점 명시 및 지정 불이행 벌칙 신설〉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5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군사기밀의 지정 주체 및 지정 시점 명시	2
2. 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5
※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7

I. 제안경위

1. 발의자 : 부승찬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6. 4. 28.
3. 회부일 : 2026.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사기밀의 지정 주체 및 지정 시점 명시(안 제4조제1항)

□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제1항의 군사기밀 지정 원칙에

①지정 주체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비밀문건의 생산 부서장)로 명시하고, ②“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이는 현행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에 의한 지정) 및 같은 항 제4호(최초 생산 시부터의 표시·고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임.¹⁾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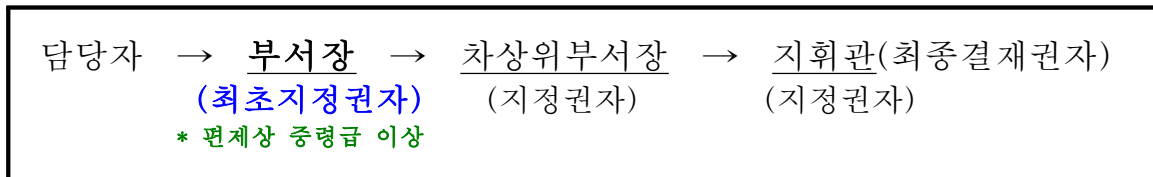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u>적절히</u>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u>지정하여야</u> 한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 ----- <u>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u> ----- ----- <u>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밀은 도난·분실·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과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는 현행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2)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실무상 비밀문건의 생산 부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결재선상 최초 지정권자 예시]



※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군사기밀의 지정 주체와 표시·고지 시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한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구속력 강화가 기대됨.

군사기밀의 지정 및 표시·고지는 비밀 보호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안 제10조의2의 처벌규정과 결합되는 경우 형벌 부과와 전제가 되는 의무에 해당함.

이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군사기밀 지정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조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0조의2)

-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0조의2(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현행법 제10조제1항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제1항³⁾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지정권자가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3)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인 “지정”의 불이행과 그 책임 주체인 “지정권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정권자의 부작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소지가 있음.

개정안은 지정 의무를 법 제4조제1항에 명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제10조의2에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과 처벌 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특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개정안 제10조의2는 군사기밀의 지정권자뿐만 아니라 “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법정형을 지정권자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고 보조자는 그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에도 양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고, 지정권한이 없는 보조자가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의 의무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309

4)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9헌가18결정).

※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I 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I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II급비밀 및 군사 III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 I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II급비밀 및 II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6조(비밀 지정권자) 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 급 비밀
 - 가. 국방부장관
 - 나. 합동참모의장, 국방정보본부장
 - 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하“각군총장”이라한다)
 - 라.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 마.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 바. 국방과학연구소장
2. II 급·III 급 비밀
 - 가. I 급 비밀 지정권자
 - 나. 국방부·국직부대·각군의 편제상 중령급이상 및 그와 동등한 직위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부서장)
 - 다.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